#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의 안 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br>(제출자) | 발의일<br>(제출일) | 전체회의<br>상정일 |
|---|---|---|---|---|
| 군사기밀 보호법<br>일부개정법률안 | 2220747 | 황운하의원 | 2026. 8. 25. | 2026. 9. 16. |
| | 2221246 | 김병주의원 | 2026. 9. 9. | 2026. 9. 16. |

나.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9.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9.1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

라.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

법률 제 호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을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② (생 략)<br>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
|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할 때 | 제22조(검사와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 |

| | |
|---|---|
| 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에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자세히 신문(訊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지방공소청장 ----------점검하게 --- 점검하는 ----------. |
| ④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